

선 람	기관의 장



제28호 2021. 7. 14.(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1-269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1-27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3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372호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6
광양시 공고 제2021-137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허가 고시(공고)	50
광양시 공고 제2021-1382호 도로 지정 공고	51
광양시 공고 제2021-1390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3

회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4.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86-5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5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1366-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186-5	20210714	20081001	백학동으로 가는 길에서 명명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64-5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95 (마동)	20210714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787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7길 119 (마동)	20210714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853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석곡1길 31	20210714	20210707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7-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동주2길 30-4	20210714	20210707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 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옥동길 100-31	옥동길 129	2021. 7. 14.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옥동길 100-46	옥동길 144		
3	옥동길 100-45	옥동길 145		
4	옥동길 100-118	옥동길 218		
5	옥동길 100-124	옥동길 222		
6	옥동길 100-128	옥동길 226		
7	옥동길 100-134	옥동길 23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4.

광 양 시 장

붙임 1

변 경 내 역

현황도



광양시 기본도 시스템



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공고 제2021-1372호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4.

광양시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일원
- 다. 계획규모 : 302,980㎡
- 라. 시 행 자 : 광양시

2. 공개개요

- 가. 공개기간 : 2021. 7. 14. ~ 2021. 7. 29.(15일간)
- 나. 공개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https://www.gwangya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방법

-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광양시 택지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 2.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광 양 성 황 · 도 이 2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전 략 및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7



광 양 시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광양시는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외연적 확산에 따른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 방향을 고려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함
- 계획지구는 광양항만 배후단지로서 정주기반 수요가 높고 동측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측은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남측은 도시계획도로(광로 2-5호선)에 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함
-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의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가. 도시의 개발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대상사업	○ 총 사업규모 : 302,980m ²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 범위	협의요청 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계획지구	○ 총 사업면적 : 302,980㎡	

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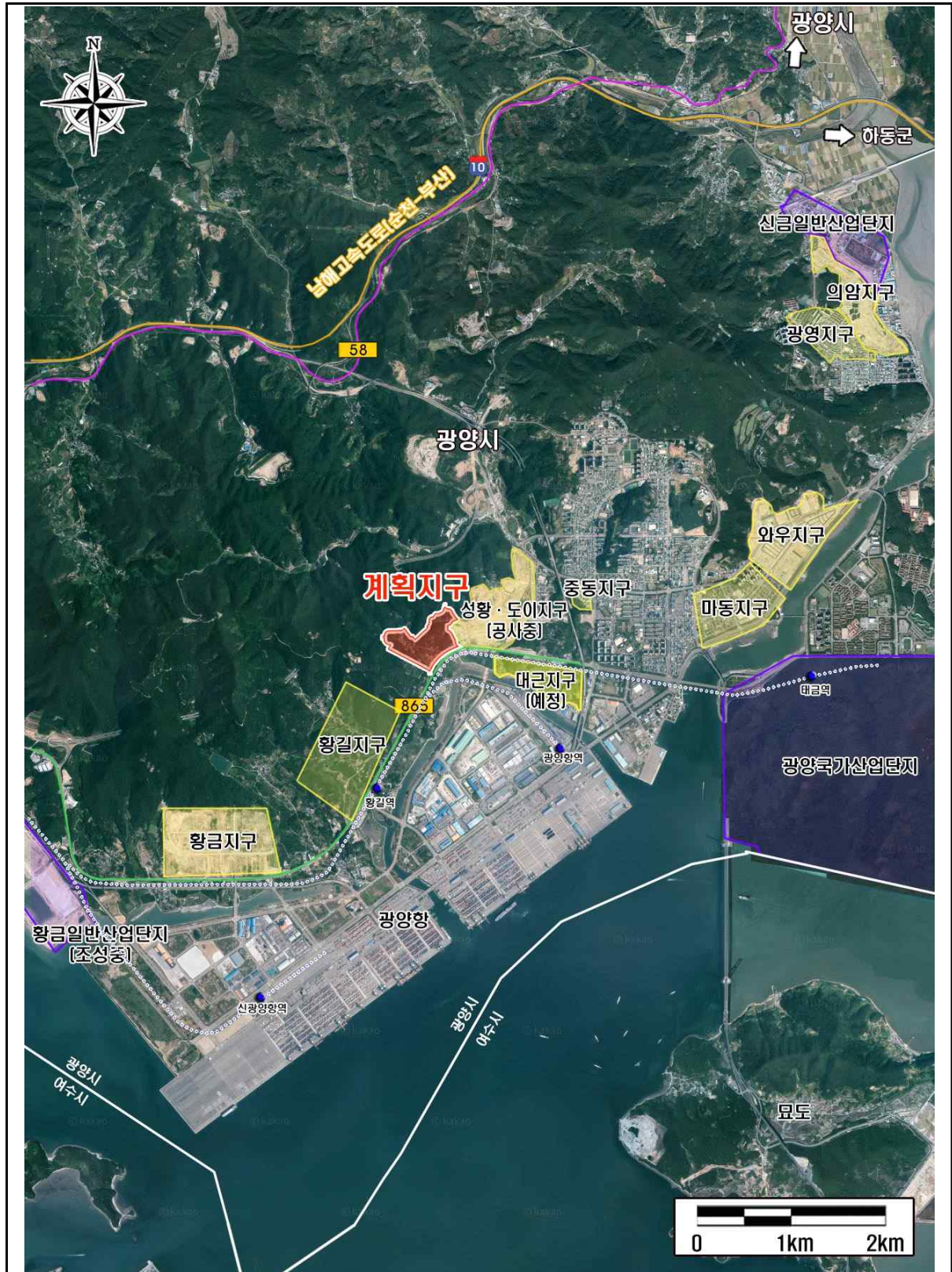
〈표 1.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내용

계획명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일원
규모	302,980㎡	계획수립자	광양시
승인기관	전라남도	협의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계획기간	2019~2025년	총 사업비	496억 원

1.6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6-1) 계획지구 위치도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수립시 계획지구 주변에 대한 자연적 여건과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4)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질 변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정온 환경 유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토양 환경 유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해양 환경 유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지자체(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수립으로 인한 편입토지 및 주변 토지이용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의 대상지역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 2020.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의 자료와 계획지구의 입지특성,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2-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평 가 대 상 범 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500~700m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500~700m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500m 포유류, 조류 700m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 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 주변 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 계획지구 인근기상대	2011 ~ 2020년
	대 기 질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5km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km	공사시 운영시
	악 취	○ 운영시 계획지구 주변 악취발생여부를 고려한 1km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과 운영시 발생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해양환경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해역을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해역	공사시

〈표 2.2-1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평 가 대 상 범 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편입지역을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장비투입대수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참조하여 300m 이내 지역을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운영시 계획지구 이동차량 의해 인근 정온 시설에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를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300m	공사시 운영시
	위탁·경관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15. 8. 환경부」에 따라 계획지구 중심에서 500m이내를 근경으로, 1km이내를 중경으로, 2km이내를 원경으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근경(중심에서 500m이내) -중경(중심에서 1km이내) -원경(중심에서 2km이내)	운영시
	위생·공중 보건	○ 운영시 계획지구 주변 오염물질 발생원을 고려한 1km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	운영시
	일조장해	○ 운영시 도시의 개발로 공동주택, 학교 등 일조장해가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공사시 운영시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공사시 운영시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3.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3.1-1〉 평가 항목 선정 사유

구 분		선정결과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타당성		-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중점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 계획시행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 계획시행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등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계에 영향 예상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현황 파악 ○ 계획시행시 대기질, 토양 변화 및 수질,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 가능여부 검토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중점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중점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예상

3.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조사·예측 등)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사업의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표 3.1-2>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3.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 서식환경 등) 및 자연환경 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포유류, 조류 : 계획지구 주변 700m × 1회 -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500m × 1회 - 육수동물상 : 인근수계 × 1회	○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여부 검토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여부 검토 ○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의 문제점 검토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영향 유무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산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대상지역 검토 ○ 백두대간, 주요 정맥 등 산줄기의 훼손 여부 검토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 검토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초래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대한 영향 검토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수질 현황, 지하수질현황, 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 영향 검토

〈표 3.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생활 환경 의 안정 성	환경 기준 부 합 성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4지점 × 1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환경기준(대기질) 부합성 검토
		수질	① 조사내용 : 수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 지표수질 : 3지점 × 1회 - 지하수질 : 3지점 × 1회	○ 계획지구 및 주변 호소 및 수계의 현황 파악, 계획시행시 환경기준(수질) 부합성 검토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4지점 × 1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환경기준(소음·진동) 부합성 검토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3지점 × 1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환경기준(토양) 부합성 검토
		해양환경	① 조사내용 : 해양환경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해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수행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환경기준(해양) 부합성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시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해당 계획의 자원·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는지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검토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음

3.2 환경영향평가

3.2.1 평가항목의 선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3.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중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 부지조성	○ 지형변형 ○ 수목의 벌채 ○ 절토 및 성토 ○ 발파 및 굴착 ○ 토지점용, 지장물 철거
	○ 건설자재	○ 골재, 석재의 확보·운반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토사이동
	○ 시설공사	○ 교량 및 교차로 설치 ○ 배수 및 통로공사 ○ 포장공사 ○ 공사인부 투입
운영시	○ 시설이용	○ 공동 및 단독주택, 상가 및 지원시설 등 ○ 학교 및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 공원, 녹지 및 기타시설
	○ 오염원 발생	○ 용수공급 및 오수발생 ○ 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및 일조권 변화 ○ 생활폐기물 발생
	○ 차량통행	○ 배기가스 등 발생 ○ 소음 발생
	○ 사회영향	○ 인구 및 주거시설 증가 ○ 상업시설 증가

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앞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들의 상호 관련성과 크기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3.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3.2-3〉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영향 평가항목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 제 분야				
			동· 식 물 상	자연 환경 자산	기 상	악 취	대 기 질	온 실 가 스	수 질	수 리· 수 문	해 양 환 경	토 지 이 용	토 지 양 지 질	지 형· 지 질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소 음· 진 동	위 락· 경 관	위생· 공중 보건	전 파 장 해	일 조 장 해	인 구· 주 거	산 업		
환경 요소	영역	구분	지형변형	□	□									○			△							
			수목의벌채	□	□			□	□				□			△		△						
공 사 지 역	부지 조성	흙깎기 및 쌓기						□	□	△		□	○		□	△								
		밭파 및 굴착					□		△				□		○									
		토지점용, 지장물철거										□	△		□									
		건설 자재	골재,석재의 확보·운반			△		△	△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	○				△		△	□		△						
	시설 공사	토사이동			○		○			△														
		도로설치	△	△					△															
		배수 및 포장공사			△		△	△	△		△			△	△									
		공사인부투입							△			△		△										
		운 영 시	시설 이용	도로 및 주차장	□	□	△		△	△		△	△	■			△	□	□				■	■
주거 및 상가시설							△	△	□	△	△	●			□	△	□			□	●	■		
학교 및 공공시설									□	△	△	■			□	△	△			△	●	▲		
공원 및 기타시설							▲	▲	▲			■					■				▲			
오염 원 발생	오·폐수 발생		△	△		△			○		△							△						
	폐기물 발생		△	△		△									○									
	건축물 입지		△	△																□				
	기타 오염원 발생		△	△		△	△	△										△						
	소음 발생		△	△												□							△	
지역 개발	인구유입 및 주거확충		△	△			△	△	□		△	■			□	□						■	▲	
	지역경제 변화							△			■				△						■	▲		

다. 평가 항목의 설정

1) 평가대상 항목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 2020.12.2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2011.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동·식물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자연환경자산, 기상, 악취, 해양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주거, 산업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9개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파장해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3.2-4〉 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선정사유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중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가 예상됨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변화 발생 ○ 운영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수생태계 영향
	자연환경자산	일반	○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
대기환경	기 상	일반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악 취	일반	○ 운영시 인구증가, 오수발생 등에 따른 일부 악취 유발 가능성 예상
	대기질	중점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 운영시 주거인구의 난방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배기가스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온실가스	중점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자재투입, 운영시 난방 및 차량통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표 3.2-4 계속〉 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선정사유
수환경	수 질	중점	○ 공사시 부지조성에 따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주변 수계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유입 및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 발생
	수리·수문	중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계의 홍수위 및 홍수량 증가 등 수리·수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함
	해양환경	일반	○ 사업지구는 육지경계선으로부터 15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사업 특성상 발생 오수의 해양 직접 유입이 없어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없음
토지환경	토지이용	중점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 양	중점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지질	중점	○ 공사시 토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일반	○ 공사시 지장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운영시 주거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소음·진동	중점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발파 및 항타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차량통행 주거인구로 인한 소음 영향이 예상됨
	위락·경관	중점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 주택 및 지원시설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위생·공중보건	일반	○ 운영시 주변 산업시설 운영에 의한 사업지구 내부 주거용지의 위생·공중보건 영향이 예상됨
	전파장해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유발요인은 없음
	일조장해	일반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권의 변화가 예상됨
	인구·주거	일반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됨
사회·경제환경	산 업	일반	○ 사업시행시 산업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함

3.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조사·예측 등)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사업의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3.2-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육수동·식물상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주변 500~700m)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포유류, 조류 : 2회 (계획지구 주변 700m) -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2회 (500m) - 육수동물상 : 2회 (인근수계)	○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파악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대기 환경	기상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와 인접한 기상대 ③ 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 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로부터 약 1km(현지조사), 5km(자료조사)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 2회	○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운영시 : CALINE-3
	악취	① 조사내용 : 주변 악취발생원 및 악취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로부터 약 1km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 2회	○ 계획지구 및 주변 악취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악취 영향 예측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 현황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표 3.2-5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수 환경	수질	①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2km, 자료조사)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 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3지점 × 2회 - 지하수질 : 3지점 × 2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합리식 이용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원단위법 이용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 예측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지구 주변 수계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사업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참조
	해양 환경	① 조사내용 : 해양환경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해역(2km, 자료조사) ③ 조사방법 : 기존 조사자료 활용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해역의 영향 여부 검토 ○ 해양보호생물 서식여부 및 보호방안
토지 환경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지점 × 2회	○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특이지형 분포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자료 및 사업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원단위법 이용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약 300m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 2회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 운영시 계획지구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3차원 소음예측모델 이용

〈표 3.2-5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 환경	위락· 경관	① 조사내용 : 위락·경관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위생· 공중 보건	① 조사내용 : 의료기관, 인력, 법정전염병, 인 구집단분석, 환경취약계층 분포, 사망률 유병률 현황 및 건강영 향평가대상물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로부터 약 1km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 2회	○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및 복합악취 발생량을 산 정하여 영향예측 -통계연보 등 자료 참조
	일조 장해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인근 고층건물 현황 및 계획시행 후 다세대주택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권 변화 예측 -일조권 분석 프로그램 이용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및 영향 검토 -자료 및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산업	① 조사내용 : 산업현황 파악 및 산업구조 변 화예측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변화 예측 및 영향 검토 -자료 및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나. 조사지점 선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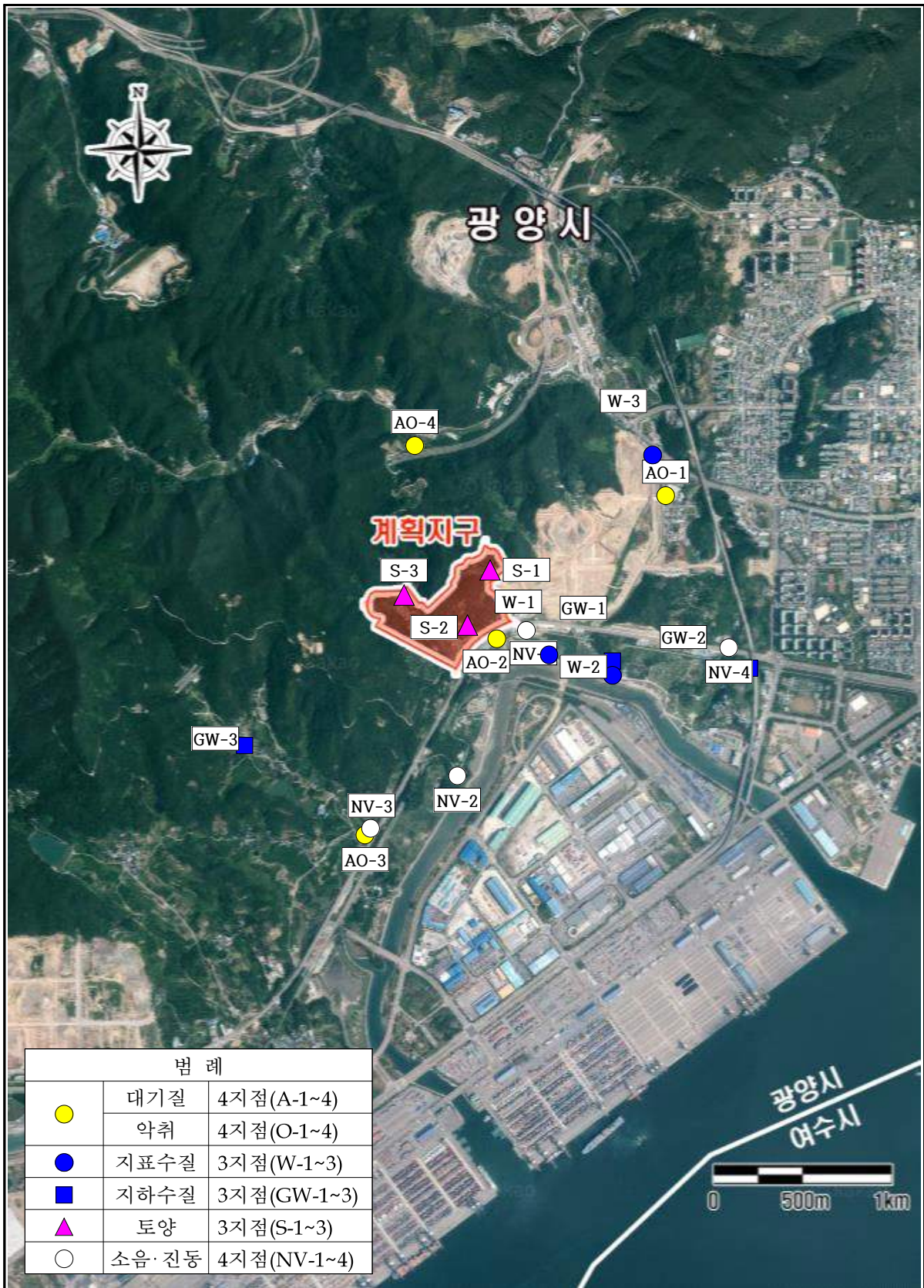
3.2.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가. 현지조사

〈표 3.2-6〉 평가항목 조사계획(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환경 질	대기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총 8개 항목)	4지점 (일평균)	3회 × 3일연속
	악 취	○복합악취	4지점	3회 일 2회 × 3일연속
	지표수질	○pH, 수온, 유량,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21개항목)	3지점	3회
	지하수질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Pb, F, As, Hg, CN, Cr ⁶⁺ , NH ₃ -N, NO ₃ -N, Cd, 페놀, 경도, KMnO ₄ 소비량, 냄새, 맛, Cu, 색도, ABS, pH, Zn, Cl ⁻ ,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SO ₄ ²⁻ , Al(28개항목)	3지점	3회
	토 양	○Cu, Pb, Cd, As, Hg, Cr ⁶⁺ , CN, Zn, Ni, 불소, 유기인, PCB,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18개항목)	3지점	3회
	소음진동	○등가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및 진동레벨(주간 2회, 야간 1회)	4지점	3회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육상 식물상 - 식물상, 식물군락현황, 식생보전등급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회
		○육상 동물상 -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조류 · 종 분포현황 · 주요 종의 개체수 · 법정보호종 현황		
		○육수 생물상 - 어류, 저서성무척추동물 · 종조성 및 군집분석 · 법정보호종 현황		



(그림 3-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측정지점 위치도(현지조사)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광양시)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광양시)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의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광양시)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광양시)의 정보통신망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문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문 작성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쪽 내외로 작성할 계획임(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알기쉬운 평가요약서 작성요령” 참조)
-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광양시)과 협의하여 해당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지자체와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다.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2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관 시·군·구(광양시)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의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관 시·군·구(광양시)의 정보통신망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문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문 작성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쪽 내외로 작성할 계획임(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알기쉬운 평가요약서 작성요령” 참조)
- 평가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광양시)과 협의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지자체와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다.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관할지자체인 광양시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제5장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5.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하여 본 계획은 [별표2의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표 5-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해당여부
가. 도시의 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해당없음

5.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 계획지구의 면적은 302,98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에 해당되며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 따라서 계획지구는 약식평가 절차 대상사업에 포함되나 생태·자연도 2등급 분포,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하수처리계획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정식 절차로 진행할 계획임

〈표 5-2〉 약식환경영향평가 절차 해당여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u> 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해당 - 대상사업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21%임 - $(302,980\text{㎡} / 250,000\text{㎡}) \times 100 \approx 121\%$

〈표 5-2 계속〉 약식환경영향평가 절차 해당여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2. 사업지역에 <u>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u>생태·자연도 1등급권역</u>	- 해당사항 없음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u>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u>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자연공원</u>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u>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u>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u>상수원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운영위원 : 승인기관(전라남도),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10인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광 양 시 택 지 과	문○○	제4조제2항2호
위 원	영산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고○○	제4조제2항1호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김○○	제4조제2항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제4조제2항3의2호
	광 양 시 환 경 과	황○○	제4조제2항4호
	전남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조○○	제4조제2항5호라목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박○○	제4조제2항3호
	광 양 만 환 경 포 럼	김○○	제4조제2항5호나목
	골 약 동 지 역 주 민	강○○	제4조제2항5호가목

6.2 심의의견

○ 광양시청 택지과 문○○(계획수립기관)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계획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을 설정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기 개발 중인 성황·도이지구와 연결한 지역으로 건축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진동에 대한 세세한 검토 필요.
 - 개발 예정인 대근지구와 연결한 지역으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지점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폐지 예정인 대화천(소하천)에 대한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필요.
 - 주변 지역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조사를 이행 중으로 기간, 위치 등이 중첩될 경우 불필요 조사(지점, 횡수 등) 제외 검토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6. 28.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문성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광양 성황 ·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전남 광양시 도이동 일원에 주거지 등을 조성(302,980㎡)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기본계획임
- 동 계획지구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및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이 다수 포함된 바, 식생이 양호한 입야는 최대한 원형보전 또는 제척하는 등 해당지역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은 택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입인구의 수요·공급에 대한 면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필요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 주변에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인구, 개발현황, 입주율 등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
-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 지역 재설정
 - 영향권 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누적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지구 주변 산지, 수계 등 생태축과 계획지구 내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형녹지, 조성녹지, 공원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지형적 특성과 바람길을 살리는 공간배치계획(통경축 확보, 증고 하향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 환경유발시설(산단, 도로, 철도 등)에서 유발되는 대기질, 악취, 소음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완충녹지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반드시 검토·반영

3. 대안

- 대안 설정 시에는 사업지역 위치, 사업 규모, 수단방법(토지이용계획) 등 각각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환경영향 포함) 및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하여 선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범위는 광역조사와 현지조사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종 출현(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량·정성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정보호종 등을 포함한 동·식물상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녹지자연도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경관) 경관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경관법 및 광양시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을 반영·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적정한 조망점(도로 등)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관련 자료 등과 적정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환경의 보전)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안(LID 기법 적용 등)을 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준의 부합성)
 - (악취, 위생공중보건) 계획지구 주변에 환경오염영향시설(산단, 하수처리시설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악취, 건강유해물질 등에 대한 실측자료를 제시하고, 운영시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후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공사 시 근접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및 운영 시 사업부지 주변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영향을 예측조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정온시설 및 방음시설(방음벽 등)의 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소음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영향 예측·분석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용수 필요량, 오수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단지 내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 계획 및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발생량을 예측하고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해양환경) 사업지구는 연안육역에 해당되므로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우수처리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로 평가항목에 포함(해양수질 및 생태계 등)하여 평가서 작성·제시하여야 함
- (경관, 일조장해)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등 고층 건축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일조권 피해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되는 바, 사전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예측·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저감방안(층고 하향, 건축물 배치 조정, 통풍속 확보 등)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토지이용) 해당사업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적용 대상이므로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용도지역별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7.1., 환경부)' 참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및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6. 기타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자료(10년 이내)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을 입안 시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1. 7. .

심의위원 고 지 하 /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팔 의 건

- 동 사업은 광양시 도이동 47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심의의견과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동측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서측 (가칭)어린이 테마파크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망, 기반시설, 가구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검토
- 공동주택용지 1BL 남측부는 준주거시설용지와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계획 검토
- 공원, 녹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계획 검토
- 과도한 상업기능 배치는 지양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초등학교 계획이 없고 주변 성황·도이지구에 중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협의와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동선계획 필요

3. 대안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필요
- 사업대상지는 임야지역에 하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급경사지 및 개발불능지에 대한 완충공간 확대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정하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검토를 통한 영향예측 시행
- 평가항목 조사지점은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 전·후 영향여부 및 영향정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한 비교·분석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이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정식절차 진행으로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계획인 광양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구역 지정 요건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2021. 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김민준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과업명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검토의견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사업대상지는 인접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충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며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이의 양호하게 보전된 산림과 농경지 등을 대부분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입지 및 규모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상기 계획 및 입지 적절성을 확인한 후, '성황·도이지구' 및 '황길지구', '황금지구' 등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고려하여 규모 적절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계획 대안 - 입지 대안을 비교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61쪽)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적절한 대안 선정·비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부지 내 급경사 양호산림을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악취 -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악취 현황을 면밀히 예측·평가하여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사업부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유발시설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악취 영향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악취 조사범위를 계획지구로부터 약 500m 이내로 제시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광양항과 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범위를 1km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부지 남측 광양항과 국가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배출시설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생태계다양성·서식지 보전 - 사업부지 내부 급경사 양호산림을 최대한 원형보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접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누적적 생태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원·녹

	지 조성 규모를 확대하여야 함 ◎ 일조장해 -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내부 일조장해가 우려되므로 일조장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예측·평가한 후, 일조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진동 - 사업부지 내·외부 도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영향을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남측 도로 소음현황 조사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인구·주거 - 주변 택지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주거시설 규모 적정성 및 비주거시설 규모 축소 등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구·주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거시설 조성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시설 공급 규모 및 입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에 대하여 플랜카드 설치 및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소속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6. 25.

성명 이 기 보 / 직책 이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평가 지역 및 평가항목 선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의 대상지역 설정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임.
대기는 대기 확산등을 고려하여 최소 2Km 범위까지 조사가 필요하며
사업지구는 해수면에서 300m미만 거리에 위치하고, 해수면으로 유입되는 하천과는
약40m 거리에 위치하여 수질분야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는 해수면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 개발이 진행중이 성황·도이
지구와, 대근지구, 개발 예정중인 대근지구, 성황산업단지와 더불어 비점오염원등 중에 따른
오염부하량이 더욱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표6.1-2>와 <표6.2-5>, <표6.2-6>의 조사횟수가 상이함
대기 및 수질에 대한 조사는 계절등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3회이상의 조사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

- 의견없음

2021. 6. .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황:

○ 전라남도 해양융합과학과 조○○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도시개발사업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함. 평가준비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단,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 및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에 인접해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대기 환경 및 수계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대기환경 및 수계환경에 미치는 공간적인 영향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비점오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단,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 및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에 인접해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대기 환경 및 수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환경 및 수계환경에 미치는 공간적인 영향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대기환경은 5km, 수계환경은 2km 범위로 확장할 필요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하게 수립됨.

3. 대안

○ 적절하게 설정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중점 및 일반 항목으로 적절하게 선정됨.

평가범위 및 방법: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대기환경은 5km, 수계환경은 2km 범위로 확장할 필요 있음. 공사시 토사 유입 방지 및 운영시 비점 오염원 유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 있음.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해당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없음.

2021. 6. 28. 광양 석왕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박○○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로 상호 보완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주택공급을 위한 주변지역 계획과 산업단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구봉화산에서 이어지는 골약동과 사업지구 북측 능선으로부터 연결되는 사면 고려
- 광양성황일반산업단지 영향 고려

2. 토지이용 구상안

- 성황도이지구와의 연계성 반영
- 사업지구 남서측 유희시설 및 주차장 계획과 상충성 검토 반영

3. 대안/환경보전방안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기초시설 적정성이 시설 규모 결정과 관계가 크므로 “중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참조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미신청

7. 기 타

- 주변의 성황도이지구, 와우지구, 마동지구, 대근지구, 황길지구 계획과 연계한 공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2021. 6. 23.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행정계획과 관련 있는 상위계획 및 연계성 및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함.
- 주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인근 지역에 항만 물류단지가 있어 소음과 악취 등 대기오염 저감방안이 수립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공사 중 토사유출에 의한 혼탁수 방지를 위해 소하천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택지내에 우수 저류지 설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및 비산 방지망을 설치하고 비산 방지망 설치 높이는 추후 협의.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범위를 계획지구경계로부터 성황천까지 약 500~700m까지 확대하여 설정 검토바람.
- 대기질 및 악취 등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약1km 예측범위를 확대하여 전대이너 터미널 및 항만 물류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질 및 악취 등 평가범위를 대상지역을 설정하시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획지역 내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원 및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생태면적을 적용지침을 참조하여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입지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설정이 필요하며,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예측 시 누적평가를 하여야 함.
- 주변 하천 인접에 따라 토사 유출 등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강구 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자체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환경관련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적용 등 평가하여야 함.

2021. 6. .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김 

○ 골약동 지역주민 강○○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광양항 배후단지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검토 필요.
 - 성황·도이지구 및 대근지구와 연계 가능토록 관계부서(기관)과 면밀한 협의 필요.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변지역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검토 필요.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6. 28.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강

< 서식 >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	획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일원
계	획	시	행	자
의			견	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년 7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1-1378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 양 시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주)엘지유틸버스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소하천명		외암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711		
	면적	8㎡	매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7. 13.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물신주 및 안전헬스)		

첨립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6만분의 1 지형도)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 7. 14.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1. 7. 14. ~ 2021. 7. 28.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36번지	편규진 장정숙	8.2m 26.3m	7m 4m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36번지	93.2㎡	동 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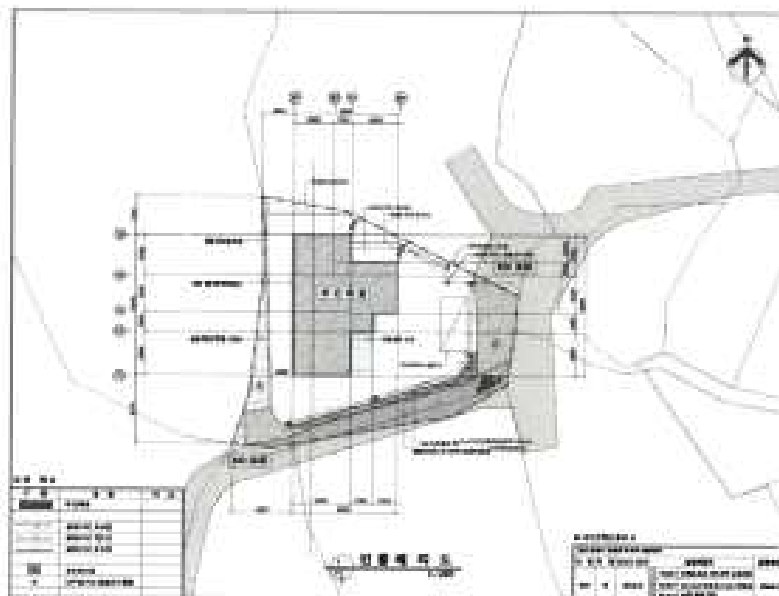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500,

[] 1/1,200

광양시 공고 제2021-1390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전용구역 의무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전액 감면
 -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 시에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대상에 공영주차장 추가
 - 장애인들이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대상에 공영주차장을 추가(주차면 10대 이상 시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 변경
 - 법률 조항 변경: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등

3. 예고기간: 2021. 7. 14. ~ 8. 3.(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일까지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gas3454@korea.kr

2)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3) 팩 스: 061-797-2591

라. 문의처: 광양시 교통과(전화: 061-797-2367)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붙임 2】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1호 중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유차량에 ” 를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유차량 및 친환경차 충전 시에 ” 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항 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를 “감정평가법인 등이” 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를 “감정평가법인 등이” 로 한다.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제1항 중 “부설주차장” 을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1. ----- ----- -- 및 친환경차 충전 시에 대하여--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① (생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①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 ----- -----감정평가법인 등이----- ----- ---
② (생략)	② (생략)
3. -----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3. ----- -----감정평가업자 등이--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u>부설주차장</u>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부설주차장 및 <u>공영주차장</u> 주차대수의 ----- ----- -- , 부설주차장 및 <u>공영주차장</u> 의 ----- -----.
다만, <u>부설주차장</u> 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